

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

임대인(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)과 임차인(이름 또는 법인명 기재)은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

[임차 상가건물의 표시]

| 소ス | ㅐ 지 | | | | | | |
|--|-----|-------|--|----|----|--|--|
| 토 | 지 | 지목 | | 면적 | m² | | |
| 건 | 물 | 구조·용도 | | 면적 | m² | | |
| 임차할부분 | | | | 면적 | m² | | |
| 유의사항: 임차할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. | | | | | | | |

[계약내용]

제1조(보증금과 차임) 위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에 의하여 보증금 및 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.

| | | · | | | | | | | |
|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|--|
| 보 증 금 | ПO | | 원정(₩ | <i>†</i> | | |) | | |
| 계 약 금 | 巾 | 원정(₩ |)은 | 계약시에 | 지급하고 | 수령함. 수 | :령인 (| 인) | |
| 중 도 금 | 巾 | 원정(₩ |)은 | | _년 | 월 | 일에 | 지급하며 | |
| 잔 금 | ПO | 원정(₩ |)은 | | _년 | 월 | 일에 | 지급한다 | |
| 차임(월세) | 己 | 원정(₩ |)은 | 매월 | 일에 지급형 | 한다. 부가세 | □ 불포함 | □ 포함 | |
| | (입금계좌: | | | | | |) | | |
| 환산보증금 | 금 | | 원정(₩ | <i>†</i> | | |) | | |
| 유의사항:① 당해 계약이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인 경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없고, 전세권 등을 설정할 | | | | | | | | | |
| 수 | 있습니다 ② 5 | 보증금 보호를 위해 등기사항증명 | 령서, 미닡 | 납국세, 상고 | 가건물 확정 | 병일자 현황 | 등을 확인 | 하는 것이 | |

| 제2조(임대차기간) | 임대인은 임차 | 상가건물을 임 | 임대차 목적대로 | 사용·수익할 | 수 있는 상태로 _ | 년_ | 월 |
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|
| 일까지 임차 | 인에게 인도하고 | ., 임대차기간은 | 은 인도일로부터 | 년 | 월 | 일까지로 | 한다. |

제3조(임차목적)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을 _____(업종)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.

좋습니다 ※ 미납국세·선순위확정일자 현황 확인방법은 "별지"참조

제4조(사용·관리·수선)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구조·용도 변경 및 전대나 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다.

- ②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 상가건물을 사용·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, 임차인은 임대인이임차 상가건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
- ③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5조(계약의 해제)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(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)을 지급하기 전까지,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,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- 제6조(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)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 다만,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제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.
- 제7조(계약의 해지) ① 임차인은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 상가건물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, 수익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그 잔존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,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| (| 대인에게 반환하고 ② 임대인은 임대 항 각 호의 어느 (자로부터 권리금을 | 가 권리금회수기회 고, 이와 동시에 온 차기간이 끝나기 3 하나에 해당하는 형 3 지급받는 것을 ! 해당하는 사유가 | J대인은 보증금을 3개월 전부터 임 행위를 함으로써 방해하여서는 아 | 을 임차인에게 대차 종료 시 권리금 계약 니 된다. 다! | 반환하 까지 에 따리 만, 「성 | ŀ여야 한다. 「상가건물임 ㅏ 임차인이 | 대차보호법 주선한 신 ₇ | 구임차인이 | | | | |
|--------|--|---|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|--|
| - | ③ 임대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. | | | | | | | | | | | |
| | _ | 인에게 신규임차인 의사 및 능력에 곤 | | | | | | 밖에 임차인 | 으로서 | | | |
| 저 | 계획을 임차인에게 | 획과 갱신거절) 임 구체적으로 고지 라라 계약갱신을 요 | 하고 그 계획에 [| 따르는 경우, | 임대인은 | 은 임차인이 | 상가건물임 | | | | | |
| 저 | 110조(비용의 정선 | 산) ① 임차인은 기 | 계약이 종료된 경 | 경우 공과금교 | 과 관리 | 비를 정산히 | l여야 한디 | ł. | | | | |
| | _ | 기 납부한 관리비 기수선충당금을 정 | | | | | | | | | | |
| 저 | 으로 임대인과 임 | e) 중개보수는 거리 차인이 각각 부담함 c 또는 해제된 경 | 한다. 다만, 개업 | 공인중개사의 | | | | | | | | |
| [| (공제증서 등) 사 특약사항] ① 입주전 수리 및 | 확인·설명서 교투 본을 첨부하여 임 개량, ②임대차기2 유 있는 채무불이행 | 대인과 임차인0 난 중 수리 및 개룡 | 세게 각각 교 ^당 , ③임차 상 | 부한다. 가건물 | 인테리어, ④ | 관리비의 | 지급주체, 시 | ارا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| 위하여 계약 당사지 , 각각 1통씩 보 | | 확인하고 각각 | 서명 ! 년 | 날인 후 임대 월 | | 개업공인중 일 | 기사는 | | | |
| 임 | 주 소 | | | I | I | | ы п | | l명 또는 | | | |
| 대 인 |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 | | | 전 화 | | | 성 명 (회사명) | | 18 포트 날인⑩ | | | |
| | 대 리 인 | 주 소 | | 주민등록번호 | | | 성 명 | | | | | |
| 임 | 주 소 | | | I | 1 | | | | IM (C.L. | | | |
| 차 인 | 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 | | | 전 화 | | | 성 명 (회사명) | | l명 또는 날인⑩ | | | |
| | 대 리 인 | 주 소 | | 주민등록번호 | | | 성 명 | | | | | |
| 개 업 | 사무소소재지 | | | 사무소소기 | | | | | | | | |
| 당0 | 사무소명칭 | | _ | 사무소딩 | | | | | | | | |
| 인 | 대 표 | 서명 및 날인 | 0 | 대 | 丑 | 서명 및 날인 | | | (1) | | | |

등 록 번 호

소속공인중개사

서명 및 날인

<u>(1)</u>

전화

<u></u>

전화

등 록 번 호

소속공인중개사 서명 및 날인

중 개

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! 반드시 확인하세요

<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하세요 > =

【 당사자 확인 / 권리순위관계 확인 /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 확인】

- ① 신분증·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, 적법한 임대·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- ② 대리인과 계약 체결 시 위임장·대리인 신분증을 확인하고, 임대인(또는 임차인)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여야 하며, 보증금은 가급적 임대인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합니다.
- ③ 중개대상물 확인·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, 그 내용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.

【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】

- ① 임차인이 **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**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, 환산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서에 **확정일자**까지 받으면,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.
 - ※ 임차인은 최대한 신속히 ① 사업자등록과 ②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, 상가건물의 점유와 사업자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- ② 미납국세와 확정일자 현황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하세요 > =

【계약갱신요구】

-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(3기의 차임액 연체 등,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 참조)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.
-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. 다만,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.
 - ※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,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【묵시적 갱신 등】

-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.
 - ※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,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. 다만,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가 가능합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. 이 경우,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8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< 계약종료 시 꼭 확인하세요 >

【보증금액 변경시 확정일자 날인】

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거나,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**다시 확정일자**를 받아야 합니다.

【임차권등기명령 신청】

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건물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, **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**해야 우선변제 순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【임대인의 권리금 회수방해금지】

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,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,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,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, 공과금,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,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, ④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.

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로는 예를 들어 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, ②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 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,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,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,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.